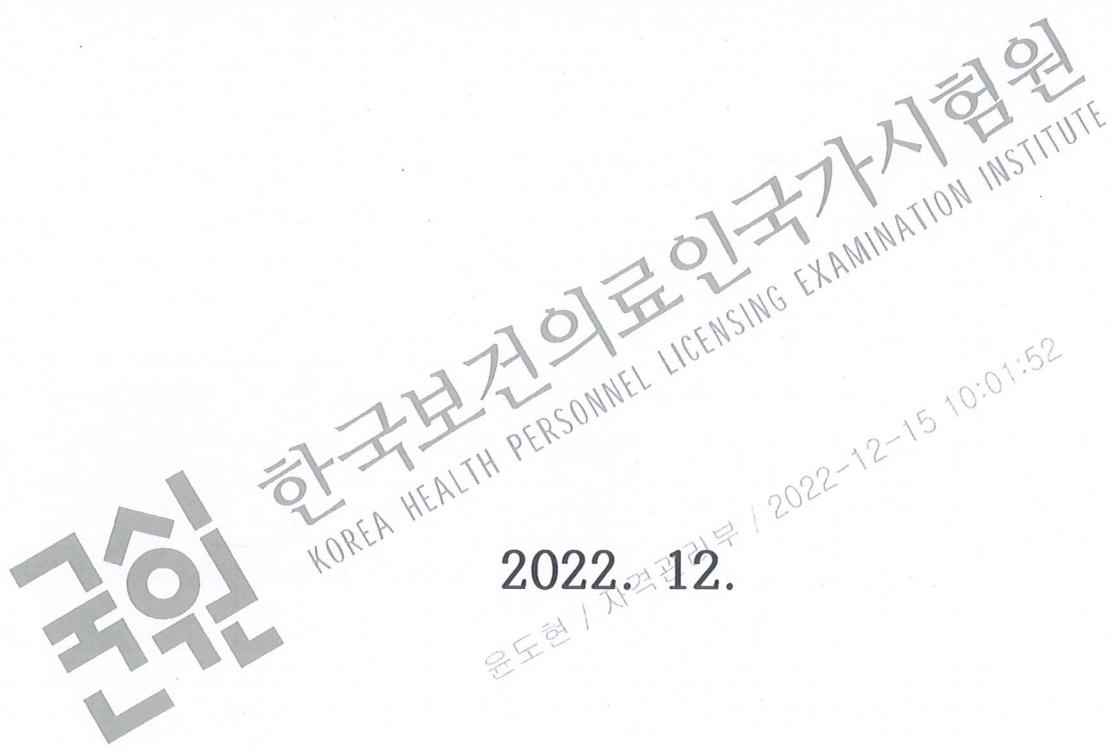


본 문서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허가 없이 복사, 수정 및 배포를 금합니다.

## 2022년도 하반기 및 2023년도 상반기 보건의료인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안내



국민이 신뢰하고 감동하는 시험평가기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1.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은 보건의료인국가시험 합격자에 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관련법에서 정한 기간 보다 단축하여 면허(자격)증을 교부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보건의료인 국가시험에 합격한 자는 면허(자격)증 교부를 위한 서류(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를 미리 준비하여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 후, 빠른 시일 내에 교부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보건의료인 국가시험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고객상담센터 (1544-424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류 보내실 곳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담당자 앞

국시원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KOREA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INSTITUTE

윤도현 / 자격관리부 | 2022-12-15 10:41:24

## ① 면허(자격)증 교부 근거

- 결격사유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의료인이 될 수 없음

- |                 |                     |
|-----------------|---------------------|
| ✓ 정신질환자         |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 ✓ 관련법 위반 수형중인 자 | ✓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

시험 직종	관련 법령
간호사	의료법 제8조 및 의료법 제10조

- 교부 신청 : 법에서 정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편 또는 방문으로 교부 신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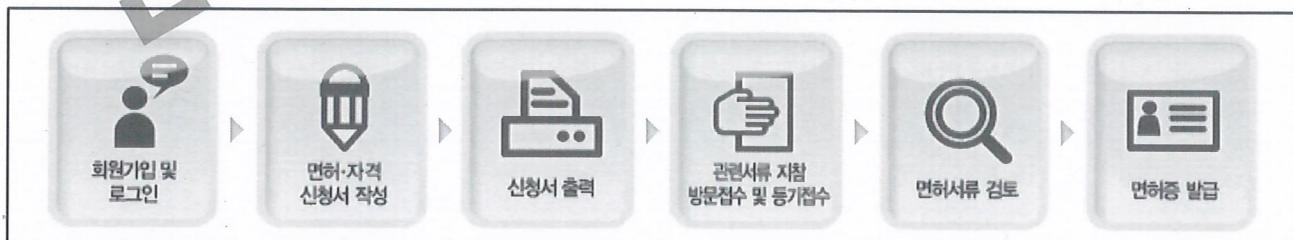
※ 합격 후 교부 신청을 통해 면허(자격)증이 발급되어야 면허(자격)의 효력이 발생됨

시험 직종	관련 법령
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1항

- 면허(자격)증 교부 : 면허(자격)교부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교부

시험 직종	관련 법령
간호사	의료법 시행규칙 제4조 제3항

## ② 면허(자격)증 교부 절차



- 회원가입 및 로그인

- 합격자 개인이 직접 로그인

- 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및 신청서 출력

- 면허(자격)증 수령방법 선택 가능(방문 또는 우편)
- 면허증 수령주소로 등기우편이 발송되므로 주소가 정확한지 확인
- 반드시 신청서를 출력하여 직종별 제출서류와 함께 발송

## ○ 방문 및 등기우편 접수

- 우편배송 사고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
- 신청서, 졸업증명서, 의사진단서 등 면허(자격)증 교부에 필요한 서류를 함께 발송
- 국시원 별관에 방문하여 직접 접수 가능(09:00~18:00)

\* 면허(자격)증 교부 신청서류 접수처(방문 또는 우편)

(05043) 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 국시원 별관 자격관리부 면허교부담당자 앞

## ○ 면허(자격)증 서류 검토

- 서류 미비, 부적합 서류 등의 경우 면허(자격)증 교부 보류
- 결격사유 조회 및 서류검토가 완료되면 면허(자격)증 교부 전행

## ○ 면허(자격)증 교부

- 면허(자격)증 신청서 작성 시 선택한 방법으로 교부(방문 또는 우편)

### ③ 제출 서류

#### ○ 제출 서류(모든 서류는 **원본** 제출 필요)

시험 직종	교부 신청서	졸업 증명서	의사 진단서	성적 증명서	이수 증명서 (국시원 서식)	경력(종사) 증명서 (국시원 서식)	비고
간호사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input type="radio"/>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면허·자격 신청서 작성] 메뉴에서 출력한 “면허(자격)교부 신청서” 하단에 제출 서류에 대한 상세한 내용 확인 가능

### ④ 제출 서류별 세부 안내

#### 가. 면허(자격)교부 신청서

##### ○ 제출 대상

- 면허(자격)증 교부 대상자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면허·자격·증명서]-[면허·자격 신청 및 조회]-[면허·자격 신청 서 작성]작성 후 출력

○ 주의사항

- 면허(자격)증 수령방법 선택 가능(방문 또는 우편)
- 면허(자격)교부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
- 신청서에 인쇄된 바코드가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

나. 졸업증명서(원본)

○ 제출 대상

- 간호사 등 관련 학위를 취득하여야 응시자격이 발생하는 자

○ 발급처

- 대학 홈페이지, 대학 내 발급센터, 정부24(<http://www.gov.kr>), 주민센터 등

○ 주의사항

- 졸업예정증명서 불인정
- **pdf파일로 발급받은 졸업증명서를 출력한 경우 '사본'이므로 인정하지 않음**

다. 의사진단서(원본)

○ 제출 대상

- 면허(자격)증 교부 대상자

○ 발급처

- 대학병원, 병원, 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제한 없음

○ 주의사항

- 의사진단서 발급을 위한 의료기관 방문 전 법에서 정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문구\*가 진단서에 포함되는지 전화로 확인 후 방문

\* 정신질환자,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가 아님

- (신청자)성명·생년월일, 진단내용, 진단일, 의료기관명, (의사)성명·면허번호  
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불인정
- 발급일이 면허(자격) 신청 서류 **도착일 기준 1개월**이 지난 경우 불인정

라. 개인정보(정정)요구서

○ 제출 대상

- 인적사항(사진, 이름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

○ 서식

- 국시원 홈페이지 [시험정보]-[서식모음]

○ 주의사항

- 사진 교체 : 정정요구서, 신분증 사본, 사진 1매 제출
- 이름 변경 : 정정요구서와 신분증 사본, 기본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인적  
사항 변경 내역 반드시 포함) 제출

마. 외국국적자 추가서류

○ 제출 대상

- 외국 국적자

○ 교부 및 서식

- 외국 국적자는 결격사유조회 제출 서류를 발급받아 영사확인 또는 아포스티유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한국어 및 영어가 아닐 경우 번역·공증 필수)

국가명	교부서류	확인내용	교부처
네팔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네팔 내무부 경찰국
뉴질랜드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
대만	성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 타이베이 대한민국 대표부

국가명	교부서류	확인내용	교부처
독일	범죄경력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독일 연방 법무부
러시아	신원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러시아 연방 내무부
말레이시아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말레이시아 대사관
몽골	범죄경력 조회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경찰청
미국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미국 대사관
벨기에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벨기에 대사관
브라질	범죄경력 증명서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브라질 사법부 (해당 지역 연방 일급 법원)
스위스	범죄기록부	범죄기록 사실유무	스위스 연방 정부
아르헨티나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아르헨티나 대사관
오스트리아	신원조회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오스트리아 대사관
우즈베키스탄	범죄사실 확인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우즈베키스탄 대사관
일본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일본경찰청
	신분증명서	금치산자 · 파산선고 사실유무	해당시청
중국	미수형사처분공증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시 공증처
캐나다	AFFIDAVIT	① 금치산자 · 한정치산자 사실 유무 ② 범죄기록 사실유무	주한 캐나다 대사관
파라과이	범죄기록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해당 경찰청
피지	신원조회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피지 경찰청
필리핀	범죄경력 회보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필리핀 법무부 국립수사원
호주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호주 경찰청
베트남	범죄경력 증명서	범죄기록 사실유무	중앙 직속시 또는 성 사법청

※ 서류 발급처는 해당 국가 및 대사(영사)관 정책에 따라 변동 될 수 있음.

## ⑤ 유의사항

- 면허발급과 관련된 모든 서류는 **국시원 별관(서울특별시 광진구 자양로 126 성지하이츠 2층)**으로 발송해야 함. 국시원 본관으로 발송 시 면허발급이 지연 될 수 있음.

- 우편 발송 시, 가급적 등기우편을 이용하고 배송사고를 대비하여 반드시 등기번호를 별도 기재해 두어야 함.
- 우편물의 국시원 도착여부 확인은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등기번호 조회를 통한 확인 요망(국시원에서 전화를 통한 확인은 불가능함)
- 서류접수 및 면허(자격)증 교부에 대한 진행상황 조회는 국시원 홈페이지 로그인 [마이페이지]-[면허·자격발급 진행상황]에서 확인이 가능함.
- 제출서류가 미비할 경우, 미비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면허(자격)증이 발급되며 미비서류를 일정기간 이상 미제출시 제출서류 일체가 반송됨.
- 면허(자격)교부신청서 작성 시 **등기우편물 수령이 가능한 주소**를 입력해야 함.  
면허(자격)증은 등기우편으로 발송되면, 수취인이 없을 경우 반송됨.
- 면허(자격)증 방문수령 신청자는 면허증 수령 안내 문자 수신 후 국시원 별관으로 방문하여야 함(신분증 지참 필수).
- 학교에서 단체로 면허(자격)증 교부를 신청할 때에도 모든 서류는 개인별로 첨부하여야 함.

 끝